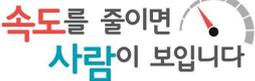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5. 28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물류시설정보과	담당 자	·과장 박일하, 사무관 배기훈, 주무관 고병국 ☎ (044) 201-4007, 4008
	물류정책과		·과장 백현식, 사무관 박정곤, 주무관 김영두 ☎ (044) 201-3998, 400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『물류정책기본법』 개정안 본회의 통과

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,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,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개정안이 '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(안 제57조)

-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·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.

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(안 제58조)

- “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”을 “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”로 문구를 수정하여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함.

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(안 제61조)

-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- 이번에 개정된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,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·기법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 시설정보과 배기훈 사무관 (☎ 044-201-4007, 신기술), 물류정책과 박정곤 사무관 (☎ 044-201-3998, 해외진출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